

#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16. 6.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강릉본부 관할지역(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및 평창군, 이하 “영동지역”이라 한다)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영동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의료·교육 관련기업
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4. 명절·재해 자금
15. 기타 지원기업
16.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7호~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업체중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강릉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이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취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강릉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에 부여한 한도(이하 “사전한도”라 한다)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8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전략지원부문 사전한도 부여)** ① 사전한도를 부여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1·4·7·10월 5일까지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한국은행 강릉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별표2>에 따라 정책호응도를 평가하여 매년 1·4·7·10월 15일까지 사전한도를 부여한다.

③ 분기별 대출실적을 확인하여 부여된 사전한도를 미소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미소진분의 100% 해당액을 2분기후 사전한도 부여시 차감하며 해당 미소진분은 사전한도 미소진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에 재배정한다. 다만, <별표2>에 따라 A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추가로 부여된 사전한도(대출취급 계획금액의 10%)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

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별표3>에서 정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별표3>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최종 배정월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8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 다만 본부장은 동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대출 취급실적은 2배로 인정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신용대출 인정여부는 대출 건별로 정한다.

1. 전액을 담보나 보증 없이 취급한 순수신용대출
2. 동업자 보증대출
3. 인적 보증대출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7조 제5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9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

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5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 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4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5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 대출 포함)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4>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2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강릉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3.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4.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5. 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6.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2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4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2012. 5. 2)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2013. 6.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3년 9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강릉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2014. 6.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4년 9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이차보전대출은 이차보전대출 만기상환시(만기연장 포함)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5. 4.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5년 7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강릉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2015. 6.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강릉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부문(전산코드)	선정 기준 <sup>1)</sup>
1. 창업기업 (A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해당기업중 농림어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운송업, 및 정보통신업(이하 “<별표 1-1> 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창업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벤처기업 (A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3. 혁신기업 (A3)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획득 업체 - ISO, JIS, UL 및 CE* 등을 획득하여 규격 또는 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CE(Certificate Of Europe)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별지 제6호 서식>한 경우)
4. 녹색기업 (A4)	-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및 환경부 환경표지등 인증제품 생산업체 -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품인증(GR) 획득 제품 생산 업체 - 기타 환경정화설비 생산업체 등 환경개선 관련 제조업체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7~39)
5. 연구개발 우수기업 (A5)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6. 추천기업 <sup>2)</sup> (A6)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육성기관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부문(전산코드)	선정 기준 <sup>1)</sup>
7. 지역특화 산업 영위 기업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 업체</li> <li>2) 무연탄 및 석회석개발 관련업체, 석제품 제조업체</li> <li>3) 선박 건조 및 수리 관련업체</li> <li>4)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강원도 향토음식 판매업체</li> <li>5) 레미콘, 아스콘 및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업체</li> <li>6)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li> <li>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li> <li>8)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의 제조 및 판매업체</li> </ol> </li> </ul>
8. 지역전략 산업 영위 기업 (A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강원도 전략산업 영위업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이오 : 웰빙, 코스메틱, 의약</li> <li>2) 해양 바이오 : 생물농업, 생물해양</li> <li>3) 의료기기</li> <li>4) 세라믹신소재 : 도자기·타일·유리 등 생활용 소재 및 이동통신부품·임플란트·LCD/P 소재·에너지소재(연료전지)·환경소재(필터)</li> <li>5) 방재(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 : 방재관련 소자, 기기 및 시스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li> <li>6) 플라즈마 : 청정멸균기술, EMI부품, 차세대 폐기물 처리장비 공정 등</li> <li>7) 과학기술의 산업화 :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li> <li>8) 과학문화 확산 : 과학관</li> <li>9) 신·재생에너지 :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가스화복합시스템,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li> <li>10) 탄광지역 종합개발</li> </ol> </li> </ul>
9. 전입기업 (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지역의 산업단지(국가, 지방 및 농공산업단지) 및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1은 제외)</li> <li>- 타 지역으로부터 영동지역으로 이전하여 가동중인 업체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1은 제외)</li> </ul>
10. 수출관련 기업 (A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인증한 수출유망중소기업</li> </ul>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A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소재전문기업</li> </ul>

부문(전산코드)	선정 기준 <sup>1)</sup>
12. 의료·교육 관련기업 (A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관련 업체</li> <li>- 교육서비스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85)</li> </ul>
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A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영동지역 소재 업체로서, 농림어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li> <li>*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 및 농어업법인 포함</li> </ul>
14. 명절및재해 자금 등 (A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적 자금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하는 기업</li> </ul>
15. 기타 지원 기업 (A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본부장이 자금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체</li> <li>* 영동지역 이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영동지역에 거래은행이 있고 위 7~9 및 13부문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중 금융기관 결제모점장이 특별히 자금 지원을 요청한 업체 포함</li> </ul>
16. 경기부진 업종 영위 기업 (A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소매업(45-47)</li> <li>- 운수업(49-52)</li> <li>- 음식·숙박업(55-56) * 주점업(5621) 제외</li> <li>- 여행업(752)</li> <li>- 여가업(90-91)</li> <li>* gambling 및 베팅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 제외</li> </ul>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1>

**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

산 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 9차)	업 종
농림어업	1~3	전체 업종
제조업	10~33	전체 업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4	시장조사업(여론조사업 제외)
	71531	경영컨설팅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건설업	41~42
운송업	492	육상 여객 운송업(단, 본사가 도내 소재 법인에 한함)
	493	도로 화물 운송업(단, 본사가 도내 소재 법인에 한함)
정보통신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11	자료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사전한도 부여기준

### 1. 기본원칙

- 정책호응도를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
  - 대출금리 운용현황(50점), 업무협조도(50점)
- 평가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순으로 순위를 부여
- 평가등급별 금융기관의 비중은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로 설정
- 사전한도는 평가등급별 대출취급계획금액의 인증비율에 따라 부여

### 2. 세부 평가방법

#### 가. 대출금리 운용현황

-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최근 3개월 신규(대환, 만기연장 포함)대출 취급실적의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으로 배정
  - 금리\*가 가장 낮은 금융기관에 5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3점씩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신규대출취급액이 없는 경우 점수 부여대상에서 제외
    - 순위부여기준 : 신규대출취급액이 전체 금융기관 신규대출취급액의 5% 초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위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동취급액의 5%이하 금융기관에 대해 이후 순위를 순차적으로 부여

\*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이차보전금리가 포함된 금리를 적용

#### 나. 업무협조도

- 다음의 기준으로 업무협조도를 평가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5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3점씩 차감하여 점수 부여
- 배점기준
  - C2자금보고서의 제출시기(15점) : 제출지연 1일당 3점 차감

- C2자금보고서의 정확성(15점) : 오류 건당 3점(보고대상대출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1점) 차감
- C1자금 관련 보고서의 정확성(10점) : 오류 건당 3점 차감
- 기타 업무협조도(10점)
  - . 회의미참석 : 1건당 3점 차감 (최근 3개월간)
  - . 업무협조의뢰 등 각종 업무관련 비협조시 : 1건당 3점 이내 차감

### 3. 평가등급별 사전한도 부여

□ 평가결과 평가등급별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대출취급계획 인정금액에 대해 50%를 사전한도로 부여

○ 단, 금융기관별 사전한도 산정액의 합산금액이 분기 잔여 전략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 산정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재산정

#### 정책호응도 평가등급별 사전한도

등급	등급비율	대출취급계획금액의 인정비율	사전한도 부여비율 <sup>1)</sup>
A	30%	110%	55%
B	40%	100%	50%
C	30%	90%	45%

주 : 1) 당초 대출취급계획금액 기준

<참고>

#### 분기별 사전한도 부여 일정표

분기	금융기관		강릉본부	
	대출 취급계획 보고서 제출시기	대출 취급시기	사전한도 부여시기	배정일
1/4분기	10.5일	11월, 12월, 1월	10.15일	1월, 2월, 3월
2/4분기	1.5일	2월, 3월, 4월	1.15일	4월, 5월, 6월
3/4분기	4.5일	5월, 6월, 7월	4.15일	7월, 8월, 9월
4/4분기	7.5일	8월, 9월, 10월	7.15일	10월, 11월, 12월

주 : 1) 제6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전한도 미소진분 차감은 2분기후 사전한도 부여시 이루어짐

(예) 1/4분기 사전한도 미소진분(금융기관 대출취급 11월, 12월, 1월)은 3/4분기 사전한도 부여시기인 4월에 「3/4분기 금융기관별 사전한도」 부여시 차감

<별표 3>

금융기관별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sup>1)</sup>

금융기관명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
우 리	A+ 이상
S C	5B 이상
신 한	A+ 이상
씨 티	3- 이상
<u>KEB하나</u>	<u>A6 이상</u>
국 민	BBB 이상
기 업	A- 이상
농 협	3B 이상
수 협	3 이상
산 업	A- 이상
대 구	3 이상
부 산	A 이상
광 주	A+ 이상
제 주	A+ 이상
전 북	3- 이상
경 남	A- 이상

주:1) 기업여신 신용등급 기준

<별표 4>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 종 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9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 점 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9 기타주점업
무 도 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 박 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
미 용 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 마 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별표 5>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계획 보고서

(201 년 /4분기)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귀하

\_\_\_\_\_은행(회) \_\_\_\_\_부(점)장 (인)

### 1. 전략지원부문 대출취급계획

#### 201○.○/4분기 전략지원부문 지원계획<sup>1)</sup>

(백만원)

지원부문	취급실적 <sup>2)</sup>				취급계획			
	○월	○월	○월	소계	□월	□월	□월	소계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입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합 계								

주: 1) 한국은행 자금지원 분기 기준이며, 금융기관 대출 취급은 2개월 선행

2) 2분기 전 분기중 취급실적

### 2. 전략지원부문 대출금리 운용계획

#### 201○.○/4분기 전략지원부문 대출금리 감면계획

(%p)

지원부문	최고	최저	평균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입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별지 제2호 서식>

##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전월말 기준	건    수						
	지원금액						
월중 변동 내역	신    규 <sup>1)</sup>	건    수					
		지원금액					
	만기상환 <sup>2)</sup>	건    수					
		지원금액					
	중도전액상환	건    수					
		지원금액					
	중도일부상환	건    수					
		지원금액					
	지원종료	건    수					
		지원금액					
	기    타	건    수					
		지원금액					
금월말 기준	건    수						
	지원금액						
증        감	건    수						
	지원금액						

주 : 1) 대환, 만기연장 포함

2) 대환, 만기연장을 한 경우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에 준하여 보고

붙임 : 1.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1부.

1-1.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부.

2.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1부. 끝.

(작성자 직위 :                    성명 :                    )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신청 사유 <sup>2)</sup>	지원 부문 <sup>3)</sup>	지원 부문 여부 <sup>4)</sup>	신용 등급 <sup>5)</sup>	업종 <sup>6)</sup>	업체 소재지 <sup>7)</sup>	업체명	사업자 구분 <sup>8)</sup>	법인등 등록번호 <sup>9)</sup>	사업자 등록번호 <sup>10)</sup>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sup>11)</sup>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sup>7)</sup>	대출일 <sup>12)</sup>	만기일 <sup>13)</sup>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sup>14)</sup>	채권 보전 <sup>15)</sup>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강릉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사전한도 소진으로 전략지원부문 업체를 일반지원부문에 대출취급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최종배정월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SOHO 기업 대출은 “SOHO” 라고 표시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대전, 경남양산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10) “-” 생략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신청사유가 “대환” 인 경우 대환일, 기한연장인 경우 당초 상환기일을 기입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 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소수 둘째자리기준),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이차보전금리가 포함된 금리를 기재

15) “순수신용” (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귀하

\_\_\_\_\_ 은행        부(점)장(인)

### I. 신청내용

대출취급액	백만원	대출기간	~
금리	고정 :                    %	대출계좌번호	
	변동 :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자금종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자금
채권보전형태	<input type="checkbox"/> 순수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 보증 <input type="checkbox"/> 혼합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지원부문	△△△△ (신청 전산코드 :            )	전략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취급점 및 담당자	OO지점, OOO (☎            , FAX            )	특별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II.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확인	(인)
주소		(☎            , FAX            )	
자금담당자		e-mail	
업종명 (KSIC 5자리코드)	△△△△ (□□□□□)	신용등급 (은행자체 등급)	
자금용도		설립일	
주 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 자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            백만원)

### III.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인)

(백만원, 연%)

변동전 보고내역							변동 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sup>2)</sup>	변동사유 <sup>3)</sup>	변동사유 발생일 <sup>4)</sup>	변동 처리일 <sup>5)</sup>	변동금액	변동후 잔액	비 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를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 창업 중소기업 확인서

(20   년   월   일)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앞

\_\_\_\_\_은행 \_\_\_\_\_부(점)장 (인)

아래 업체는 귀 본부의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서 정하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확인합니다.

점포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업종코드	설립 일자	비고
계	건						

주 : 1) 기준 제4조 제1항 1호의 창업기업으로 신청시 작성  
2) 창업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창업기업

작성 담당자 직위 :                      성명 :                      (   ☎                      )

<별지 제7호 서식>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확인서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회)

부(점)장(인)